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 및 학생총투표에 관한 시행세칙

목차

제 1 장	총	칙 (제001조~제010조)	2
제 2 장	선 거 권 과 피 선 거 권	(제011조~제012조)	3
제 3 장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제013조~제024조)	3
제 4 장	과 · 반 선거관리위원회	(제025조~제029조)	6
제 5 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030조~제035조)	6
제 6 장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제036조~제039조)	8
제 7 장	시 행 세 칙 협 의 모 임	(제040조~제043조)	8
제 8 장	선 거 운 동	(제044조~제054조)	9
제 9 장	유 세 및 선 전	(제055조~제061조)	12
제10장	학 생 총 투 표	(제062조~제067조)	14
제11장	투 표	(제068조~제081조)	15
제12장	참 관 인	(제082조~제085조)	17
제13장	개 표	(제086조~제093조)	18
제14장	당 선 공 고 와 이 의 제 기	(제094조~제096조)	19
제15장	선 거 부 정	(제097조~제098조)	20
제16장	당 선 무 효	(제099조~제100조)	20
제17장	재 선 거	(제101조~제101조)	21
제18장	선 거 의 종 료	(제102조~제102조)	21
제19장	정 계	(제103조~제104조)	21
제20장	재 정	(제105조~제107조)	22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Yonsei University Engineering Student Council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 및 학생총투표에 관한 시행세칙

제57대 공과대학운영위원회
2020. 10. 28. 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 및 학생총투표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이하 본회) 선거 및 학생총투표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이하 선거) 및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에 적용하며, 조항에 따라 과·반 학생회 선거(이하 과반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 ② 과반 선거는 이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공과대학동아리연합회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과대학동아리연합회칙」에 따른다. 단, 제75조의 경우에는 공과대학동아리연합회 선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거 시행 원칙)

- ① 본회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선거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 ③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타당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한다.
- ④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⑤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⑥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선거의 시기)

- ① 본회 선거는 통상적으로 2학기 말에 중앙 단위의 선거 시기에 맞추어 시행한다.
- ② 그 밖의 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5조(선거준비기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연서의 마감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선거공고
2. 예비등록
3. 연서기간

제6조(선거기간)

- ①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시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입후보 등록 및 공고
 2. 유세기간
 3. 투표기간
 4. 당선공고
 5. 이의제기 기간
 6.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②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의 7일 전까지 상세한 선거기간을 결정한다.

제7조(선거운동본부 ·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은 선거운동을 할 때 본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학생총투표의 관리)

학생총투표에 대한 관리는 본회의 모든 기구가 책임지되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선관위)에서 투표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9조(투표사무의 협조)

본회의 단체는 공선관위로부터 학생총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세칙 밖의 판단)

- ① 본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의 판단은 공운위에서 결정한다.
- ② 공선관위는 본조 제1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1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7일 후 본회 회원 중 재학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다.

제12조(피선거권)

후보 등록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4학기 이상 등록한 사람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3장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지위)

공선관위는 선거를 본 세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운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특별기구이다.

제14조(구성)

- ① 공선관위는 공운위에서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원회) 중 선임한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공선관위원장) 1인과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선관위원회)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공운위는 부득이한 경우 공선관위원회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선관위는 24시간 이내에 공선관위 구성과 구성의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공선관위는 공운위의 심의를 거쳐 선거의 제반업무를 집행하는 공선관위 집행부(이하 집행부)를 둘 수 있다.
- ④ 공선관위원회는 과·반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과반 선관위원회)을 겸임할 수 없다.
- ⑤ 공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7일 전까지 공선관위 구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보고 해야 한다.

제15조(임기)

공선관위의 임기는 구성 이후부터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장)

- ① 공운위는 공선관위원회 중 1인을 공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한다.
- ② 공선관위원장은 회의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공선관위원장의 궐위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공선관위원장 직을 승계할 수 있다.
 1. 24시간 이내에 회의 소집 및 주재자 1인 선임
 2. 공선관위원장 1인 선임
 3. 공선관위원장 선임 인준의 안 공운위 상정
 4. 재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인준

제17조(의무와 역할)

- ① 공선관위는 선거와 투표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공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 ③ 공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해야 한다.
- ④ 공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해야 한다.
- ⑤ 공선관위는 선본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 ⑥ 공선관위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경고”를 조치한 선본의 선거 포스터에 경고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⑦ 공선관위는 선거의 홍보와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야 한다.
- ⑧ 공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해야 한다.
- ⑨ 공선관위는 특정 선본·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 문화를 해치는 각종 선전물을 삭제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⑩ 공선관위는 학생회비에서 선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한다.
- ⑪ 공선관위는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업무에 한정하여 각 선본으로부터 일정 수의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공선관위는 해당 업무의 개시 최소 12시간 전까지 각 선본에 모집을 요청해야 하며, 불응하는 선본에는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 ⑫ 공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선본·후보자의 자격박탈
 2. 재선거
 3. 선거 일정의 조정

4. 당선무효

5.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 ⑯ 공선관위는 과·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과반 선관위)의 구성을 보고받고, 과반 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지도·관리한다.
- ⑰ 공선관위는 과반 선관위의 구성이 불가할 경우 과·반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 ⑱ 공선관위는 과반 선관위가 이관한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제18조(피선거권)

공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19조(중립의무)

- ① 공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선관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선거의 진행과 선본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사항의 수치·수량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공선관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불가피하게 표결해야 할 경우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공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공선관위원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해야 한다.

제21조(집행부)

- ① 집행부는 공선관위를 도와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집행부는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집행부는 제17조제8항에 해당하는 공선관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 1.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에 접촉하는 행위
 - 2. 투표 용지에 공선관위 직인을 찍는 행위
 - 3.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행위

제22조(사무실)

공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촌캠퍼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한 개 이상의 사무실을 둔다.

제23조(자격 박탈)

- ① 본회의 회원은 공선관위원이 제17조 또는 제19조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운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이 발생하고 공운위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공운위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공운위 의장이 공선관위원일 경우 자동으로 소집하며 공선관위원이 아닌 공운위원 중

한 사람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해야 한다.

- ③ 공운위는 사안의 경중과 의도성을 파악하여 해당 공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운위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선관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24조(재구성)

- ① 공선관위원의 과반이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공운위는 공선관위를 해체하고 24시간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 ② 공운위는 해체한 공선관위에 속했던 사람을 공선관위원으로 재선임할 수 없다.
- ③ 공운위는 공선관위를 재구성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장 과·반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지위)

과반 선관위는 과반 선거에서 공선관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26조(구성)

- ① 과반 선관위는 과·반 내 대표성을 가진 사람 중 과·반 선거관리위원장(이하 과반 선관위장) 1인과 과반 선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과·반은 과반 선관위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구성하여 공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 ③ 과반 선관위는 필요할 경우 구성 절차를 준용하여 과반 선관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27조(역할)

- ① 과반 선거에서 공선관위에 준하는 역할을 이행한다.
- ② 과반 선관위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공선관위로 이관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과반 선관위는 이관한 사안에 대한 공선관위의 결정·지침을 이행한다.
- ④ 과반 선관위원에게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이의제기)

- ① 과·반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과반 선본)와 해당 단위의 회원들은 과반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과반 선관위는 이의가 제기된 후 24시간 내에 이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제29조(조치 요구)

과반 선본 또는 해당 단위의 회원은 과반 선관위가 제2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선관위의 결정·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공선관위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30조(선거공고)

공선관위는 선거 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31조(선거운동본부 명칭)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본의 명칭(이하 선본명)을 입후보 등록 시 공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선본명에는 “+”, “-”를 제외한 어떠한 기호도 사용할 수 없다.
- ③ 이외 선본명의 제한여부는 공운위에서 결정한다.

제32조(선거운동본부 색상)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본의 색상(이하 선본색)을 입후보 등록 시 공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선본색의 제한여부는 공운위에서 결정한다.

제33조(예비등록)

- ① 예비등록은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의 기초적인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며, 본회에 속한 모든 학생회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 ② 선본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관위가 공고한 예비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공선관위 사무실에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③ 구비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선본명
 - 2. 선본색(RGB 코드)
 - 3. 후보자를 준비하는 사람의 정보
 - 4. 선본장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보
- ④ 선거의 예비등록은 총학생회 선거의 예비등록이 마감된 이후에 진행한다.
- ⑤ 선본이 예비등록 시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⑥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선본이 등록하는 경우, 공선관위는 해당 선본에게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34조(입후보 등록)

- ① 선본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공선관위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공선관위 사무실에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7호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제8호나 제9호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은 제10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8호와 제9호는 내용 상 동일해야 한다. 또한, 제8호와 제9호의 경우 영문본 정책자료집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문본 정책자료집과 내용 상 동일해야 한다.
 - 1. hwp 또는 그 외 공선관위가 정한 형식의 입후보 등록원서 파일과 인쇄물
 - 2. 본회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인 서명서
 - 3. 정·부후보 소견서 각 1매(A4용지 1장)
 - 4. 정·부후보 재학증명서 각 1매
 - 5. 정·부후보 컬러 및 흑백 사진 파일
 - 6. 성명·학번을 포함한 선본원 명부
 - 7. hwp 또는 그 외 공선관위가 정한 형식의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
 - 8. pdf 형식의 국문본 정책자료집(188*257mm, CMYK, 300dpi)
 - 9. hwp 또는 그 외 공선관위가 정한 형식의 공선관위 포스터용 정책파일
- ③ 출마 형태는 “정후보 1인”의 형태 또는 “정후보 1인과 부후보 1인”의 형태로 한정한다.
- ④ 공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고 공선관위에서 정한 공고일 18시까지 등록

한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선본명을 확정 공고해야 한다.

- ⑤ 선본이 등록일 18시 이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를 조치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
- ⑥ 선본은 등록일 18시 30분 이후에 등록을 할 수 없다.
- ⑦ 공선관위의 과실로 미비한 서류를 접수했을 경우, 공선관위는 선본에 당일 21시까지 이를 통보하고 다음 날 18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접수한다.

제35조(등록 무효)

- ① 입후보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선본·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
 -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마 형태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② 선본·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선관위는 즉시 그 선본·후보자에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6장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제36조(목적)

공선관위는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그리고 당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선관위원, 후보자와 선본원에게 성인지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37조(구성)

성인지 교육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구성되며, 인권 교육은 학내 인권 침해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

제38조(대상)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공선관위원, 공선관위 집행부, 선거 후보자 및 선본원
- 2. 과반 선관위원, 과반 선거 후보자 및 선본원

제39조(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 ① 공선관위는 시행세칙협의모임(이하 시세협)에서 각 선본의 선본원 중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한다.
- ② 공선관위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은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③ 공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공선관위원과 공선관위 집행부 중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한다.

제7장 시행세칙 협의모임

제40조(지위)

시세협은 선거를 당해 사정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제41조(구성)

시세협은 공선관위원과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으로 구성한다.

제42조(역할)

- ① 공선관위는 시세협을 통하여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의 의견을 적극 중재해야 한다.
- ② 본 세칙은 시세협을 통해 합의되어야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공선관위는 본 세칙에 따라 유권해석 한다.
- ③ 각종 공고와 선전물, 유세에 후보자의 학년과 학번 중 무엇을 표기할지 결정한다.
- ④ 시세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 내용에 한하여 본 세칙에 준한다.

제43조(운영)

- ① 공선관위장은 시세협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시세협을 소집한다. 다만, 정기소집일 외에도 긴급한 경우 시세협을 소집할 수 있다.
 1. 연서 시작의 전날
 2. 입후보 등록일
 3. 합동유세의 전날
 4. 투표의 전날
 5. 개표의 전날
- ② 선본에서 시세협의 소집을 희망할 경우 각 선본의 선본장은 공선관위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선본의 선본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세협에 참석하지 못할 시 선본장의 역할을 선본원 중 1명에게 위임하고 해당 선본원이 시세협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선관위는 위임사유의 허가여부를 판단하여 선본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선본은 반드시 선본장을 통해서만 공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 ⑤ 시세협에서 합의는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공선관위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유권해석 해야 한다.
- ⑥ 공선관위는 시세협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공선관위원과 각 선본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보관 및 공개해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44조(정의)

- ① 선거운동은 선거에 입후보한 특정 선본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② 본회 회원은 선본에 참여해 선본원으로서 본 세칙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45조(구성)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본 · 후보자의 개인유세
2. 선본 · 후보자의 강의실유세
3. 선본 · 후보자의 합동유세
4. 선본 ·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5. 선본 ·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선전
6. 선본 · 후보자의 모임과 단체 방문
7. 선본 ·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8. 학내외 언론에의 보도

제46조(기간과 공간)

- ① 선거운동의 기간은 입후보 확정 공고일 이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 ②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 ③ 이외 선거운동의 시간에 대한 제한은 공선관위에서 정한다.
- ④ 선거운동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시세협에서 선거운동의 공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⑤ 선본이 선거운동이 기간 또는 공간을 어길 경우 공선관위는 사안의 의도성을 판단하고, 의도적인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의도적이지 않으며 과실에 따른 경우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제47조(추천인 서명)

- ①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 · 사람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②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 · 사람은 추천인 서명 시 해당 선거의 언급과 정책의 기본 방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 ③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 · 사람은 추천인 서명 시 선본옷 착용과 유세 그 밖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 ④ 추천인 서명판(이하 연서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해 공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1.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사진 · 성명 · 약력 및 출마의 변
 2.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의 명칭 · 으뜸구호 · 기조 · 표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3. 공선관위에서 배포한 서명 용지
- ⑤ 모든 연서판에는 공선관위 명의의 인증 표식이 있어야 한다.
- ⑥ 그 밖에 추천인 서명의 세부 지침은 시세협에서 다룬다.

제48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선본원은 선본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본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 ② 선본원은 본회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공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휴학생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선본은 공선관위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재적증명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선본원 등록기간은 첫 번째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⑤ 모든 선본원은 학생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상태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49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관위원과 선관위 집행부
 - 2. 학생회 공식지위에 있는 사람(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과·반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의 대표자와 집행부)
 - 3. 본회에 속한 언론 단체의 구성원
 - 4. 학생총회·학생총투표·공운위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한 사람
 - 5.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수수를 받은 사람
- ② 선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휴학생은 예외로 한다.
- ③ 본 세칙에서 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 회원 모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의 선본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50조(선거운동을 위한 사퇴)

- ① 제4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에서 사퇴해야 한다.
- ② 공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의 마감일 7일 전까지 사퇴서 양식을 공고해야 한다.
- ③ 사퇴의 당사자는 공선관위에 자필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단체의 대표 또는 구성원에게 사퇴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 ⑤ 공선관위는 사퇴서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사퇴서는 수리하지 않는다.
- ⑥ 사퇴한 사람은 절차를 준수하여 선본원으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⑦ 사퇴서 수리 기간과 선본원 등록 기간은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제51조(학생회 및 언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특정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 1. 학생회 공식기구(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과·반 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 2. 본회에 속한 언론단체
 - 3. 학생총회·학생총투표·공운위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
- ② 선본은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공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2조(선거 비용의 제한과 공개)

- ① 공선관위는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의 한도를 첫 번째 시세협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 ② 공선관위는 선본이 공선관위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 할 수 있다.
- ③ 각 선본은 선거 비용의 결산을 증빙자료(영수증)를 첨부해 투표 전날 18시까지 공선관위에 전달해야 하며, 공선관위는 투표 전날 09시부터 투표 마감일 18시까지 이를 공선관위 온라인 사이트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④ 공선관위는 본조 제3항을 위반한 선본에게는 “주의” 조치를, 투표 첫날 09시까지 전달하지 아니한 선본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53조(설문조사와 서명 운동)

- ① 선본은 선거운동기간 중 설문조사나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선관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세협에서 설문조사와 서명 운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54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선관위에서 심의 후 공운위에서 논의·결정한다.

제9장 유세 및 선전

제55조(유세)

유세는 개인유세·강의실유세·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로 이루어지며 입후보 확정공고일 06시부터 투표 전날 18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공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제56조(유세 선전물)

- ① 유세의 선전물은 리플렛·신문·중형 선전물·피켓 및 선본옷에 한한다.
- ② 공선관위는 선본의 선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본의 선전물을 제거하거나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고 이를 본회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1. 선전물의 내용을 사진·그림 및 글로 구성
 2. 공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 공선관위를 통해 부착
 3. 리플렛과 신문은 흑백으로 제작
 4. 공선관위에서 허가한 소품만을 개인유세에 사용
 5. 공선관위의 도장을 찍어 승인
- ③ 선본의 선전물 부착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④ 리플렛의 경우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1. A4(210mm*297mm) 3매 이하
 2. 흑백으로 인쇄
 3. 아트지 또는 스노우지를 사용 (코팅 금지)
- ⑤ 신문의 경우 다음 각 호로 제한하며, 총 3종으로 제한한다.
 1. 신문용지 전판으로 하며 면 수는 4면 이하
 2. 흑백으로 인쇄
 3. 재질은 신문용지 이하 (80g, 코팅금지)
- ⑥ 각 선본은 중선관위에서 정한 날 06시부터 다음 각 호를 준수한 중형 선전물을 부착할 수 있다.
 1. A0 전지 2매(841mm*2378mm)의 크기
 2. 인쇄 색상의 경우 단면 4도 이하
 3.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각각의 허용 개수에 따라 최대 두 종류로 제작
 4. 공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부착
- ⑦ 공선관위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 플래카드를 부착해야 한다.
 1. 후보자의 성명·소속 및 학년(학번), 선본의 명칭·으뜸구호 포함 및 그 밖에 시세협에서 결정된 사항 포함
 2.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지정한 장소에 부착

- ⑧ 각 선본은 선거운동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피켓을 사용할 수 있다.
 - 1. 크기는 4·6판 계열 2절(545mm*788mm) 이하의 크기로 10개 이하
 - 2. 우드락의 재질이며 우천 시를 대비하여 투명한 비닐소재로 포장 가능
 - 3. 한 가지 바탕색과 내용으로 구성하며 후보자의 사진은 부착 불가
 - 4.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하로 일괄 교체 가능
 - 5. 피켓은 항상 선본원이 소지
- ⑨ 선본옷은 바탕색을 한 가지 색상으로 하며 나염은 총 두 가지 색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염은 등과 왼쪽 가슴 부위에 인쇄할 수 있다.
- ⑩ 피켓 및 선본복을 제외한 유세 선전물에는 반드시 투표 독려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투표 독려 문구의 내용과 크기는 시세협에서 협의한다.
- ⑪ 모든 선전물은 공선관위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선본원이 없는 곳에 방치할 수 없다.
- ⑫ 각 선본이 본조 제11항을 위반할 경우 공선관위는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⑬ 모든 부착형 선전물은 각 선본에서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06시부터 부착하기 시작하여 시세협에서 정하는 날 19시까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제57조(정책자료집)

- ① 정책자료집은 각 선본에서 공선관위에 입후보 마감 시한까지 제출하고 공선관위가 합본하여 출력 한다.
- ② 정책자료집의 분량은 선본당 시세협에서 정하는 쪽수 이하로 제한한다.
- ③ 출판비는 각 선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④ 각 선본은 정책자료집에 명시한 해당 선본의 정책만을 정책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미세한 차이는 공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⑤ 공선관위는 선본이 정책자료집을 개인 유세를 위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선본에 통보해야 한다.
- ⑥ 공선관위는 정책자료집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부수로 배치해야 한다.

제58조(온라인 선거유세)

인터넷과 휴대폰 그 밖의 온라인을 통한 선거유세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1. 공선관위 온라인 사이트에 각 선본의 게시판을 개설
- 2. 온라인 사이트의 내용은 본회 회원의 의견개진과 후보자의 정보, 정책자료집, 선본의 의견 및 홍보 등으로 구성
- 3. 각 선본은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전물의 종류와 크기, 게시횟수, 구체적인 게시처 그 밖의 사항은 시세협에서 합의
- 4. 그 밖의 사항은 공선관위가 결정

제59조(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

- ①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다만, 급작스러운 우천 시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시세협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1. 신촌캠퍼스 1차 합동유세
 - 2. 국제캠퍼스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 3. 신촌캠퍼스 정책토론회
 - 4. 신촌캠퍼스 2차 합동유세
- ② 합동유세 순서는 입후보 등록 이후 시세협에서 일괄적으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 ③ 각 선본의 후보자들은 유세 시간 중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합동유세의 시작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후보자가 발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공선관위는 선본·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합동유세의 시간을 결정한다. 다만, 한 선본의 유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공선관위는 선본이 유세 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시 앰프의 전원을 차단하고, 25분을 초과할 시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후 5분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⑥ 공선관위는 정책토론회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60조(합동유세 중 유세 금지)

- ① 합동유세 시간 동안 공선관위가 지정한 유세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유세를 전면 금한다. 다만, 선본옷의 착용은 허용한다.
- ② 각 선본은 자신의 유세 시간에만 유세장에 선전물을 배포할 수 있다.
- ③ 공선관위는 다른 선본의 유세 시간에 선전물 배포, 깃발 흔들기, 구호 외치기 및 그 밖의 선거운동을 하는 선본에 “주의”를 조치할 수 있다.

제61조(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 ① 선본이 선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본은 공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 ② 후보자 또는 선본원이 강의실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해당 선본은 다음날 08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강의실유세에서 정정발언을 해야 한다.
- ③ 공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총투표

제62조(투표 사무의 협조)

본회 내 단체는 공선관위로부터 학생총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3조(안건)

학생총투표의 안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투표에 회부할 문제를 의미한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토론 및 의결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토론 및 의결

제64조(안건의 상정)

- ① 안건 상정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회의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찬성
 2. 확대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찬성
 3.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찬성
 4. 학생회장의 발의
- ② 상정할 안건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날을 안건 상정일로 본다.

제65조(안건의 반려)

안건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회칙상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학생회장은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이때 안건 제안자와 회의 구성원에게 명확한 반려 사유를 전달해야 하며, 이외의 사유로 안건을 반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1. 별도로 정한 서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3.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66조(공고)

- ① 학생총투표의 공고 방법은 2개의 중앙 게시판과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해야 한다. 필요 한 경우 기타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 ②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학생회장이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공고한다.
- ③ 학생총투표의 실시는 투표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표 5일 이전에 실 시를 공고할 수 있다.
- ④ 학생총투표 실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투표 기간
 2. 투표 방법
 3. 투표 안건
 4. 실시 공고의 주체
 5. 공고 기간

제67조(개표, 의결 정족수)

- ① 본회의 회원 과반이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 ② 안건은 참여 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장 투표

제68조(투표 절차)

- ①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점자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한 용지 투표로 진행 할 수 있다.
- ② 공선관위는 투표의 상세한 절차를 투표 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69조(점자투표보조용구)

점자투표보조용구의 내용과 크기는 중선관위의 지침을 따른다.

제70조(투표구의 지정)

- ① 투표구는 다음 각 호에 1개 이상 지정한다.
 1. 신촌캠퍼스 공학관 투표구
 2.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투표구
- ② 공선관위는 투표구의 구분을 확정하고 투표 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③ 본조 제1항제1호의 투표구는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1. 제1공학관 중앙 엘리베이터 앞
2. 제2공학관, 제3공학관 사이 통로
3. 한울샘 스낵코너 옆 계단

제71조(투표 기간)

공운위는 선거 기간 중 3일을 투표 기간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2조(투표 기간의 연장)

본 세칙 제71조에 따른 투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공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투표 기간을 하루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3조(투표 시간)

공선관위는 투표 기간에 한하여 투표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제74조(투표 시간의 연장)

본 세칙 제71조에 따른 투표 마지막 일과 제72조에 따른 연장일에 한하여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투표소의 설치)

- ① 공선관위는 지정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설치해야 한다.
- ② 공선관위는 투표소의 설치 장소를 확정하고 투표 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③ 투표소의 입구와 출구는 투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다.
 1. 해당 투표소의 공선관위원
 2. 해당 투표소의 공선관위 집행부
 3.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
 4. 장애학생이 투표할 때의 동행한 도우미
- ④ 공선관위원과 공선관위 집행부,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해야 한다.

제76조(투표소 운영 시간)

공선관위는 투표소 운영 시간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제77조(투표소의 선전물)

투표소에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 공선관위가 제작한 포스터만을 부착할 수 있다.

제78조(투표자의 확인)

- ① 공선관위는 투표자의 확인 방식을 투표의 절차와 함께 투표 시행일 7일 전에 공고한다.
- ② 특정 선본의 선본원 또는 선본원의 요청에 의하여 타인이 이중 투표나 대리 투표를 할 경우, 공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회 회원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하거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9조(투표함의 봉인과 보관)

- ① 공선관위원은 투표 시간 종료 후 참관인과 공선관위원의 서명 후 투표함을 봉인해야 한다.
- ② 공선관위는 각 선본의 참관인과 동행하여 봉인한 투표함을 공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다만, 개표

일에 한하여 각 선거의 개표장으로 옮긴다.

- ③ 공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 용지를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해야 한다.
- ④ 공선관위는 투표함을 공선관위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공선관위원의 관리 하에 보관해야 한다.

제80조(후보자의 투표소 접근 제한)

후보자는 투표를 제외한 때에는 투표소에 접근할 수 없다.

제81조(실무 위임)

공선관위는 과·반 학생회 선거 및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를 선출하는 선거의 투표·개표 실무를 중 선관위와 협의하여 중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장 참관인

제82조(자격)

- ① 각 선본은 투표소 당 1인의 선본원을 참관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공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 배치를 신고한 선본원 1명의 성명과 선본명을 적은 명찰을 제작하여 참 관인에게 배부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이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동일 선본 내의 다른 선본원은 명찰을 인계받아 참관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 ④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협의한 기한까지 공선관위 투표소 당 참관인 명단과 모든 참관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씩을 선택하여 모든 참관인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재적증명서
 - 2. 학생증
 - 3. 등록금 영수증
 - 4. 그 밖의 재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83조(역할)

- ① 참관인은 투표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참관해야 한다.
- ② 참관인은 각 선본 간 협의에 따라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참관인은 투표소 운영 30분 전까지 선관위원과 함께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함을 투표소로 운반해야 한다.

제84조(제한)

-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2.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난하거나 유세 선전물을 소지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 3. 부정행위로 보일 수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한 행위
- ② 공선관위원은 투표소에서 본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참관인을 즉시 제지하고 해당 참관인의 행위를 공선관위에 보고한다.
- ③ 공선관위는 본조 제2항의 사항을 논의하여 해당 참관인에게 퇴장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선

관위로부터 퇴장을 조치 받은 참관인은 즉시 퇴장해야 한다.

제85조(이의제기)

- ① 참관인은 공선관위에 진행상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참관인이 투표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선관위원회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한 시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공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재개한다.
- ③ 참관인이 해당 투표소에 불참한 선본은 공선관위원회와 상대 선본의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장 개표

제86조(개표 시작과 순서)

- ① 투표가 종료되면 공선관위의 감독과 각 선본장의 입회 하에 선거인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1. 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
 2.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의 과반에 달함
 3. 모든 투표함의 도착
 4. 공선관위원장 및 3분의 2 이상의 공선관위원 참석
 5.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 ③ 제75조에 따라 공선관위가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선거부터 개표하되 구체적인 순서는 공선관위에서 정한다.

제87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해당 투표구의 공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
5. 해당 투표구의 선관위 도장이 없는 것

제88조(유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한 후보의 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89조(개표일과 개표 장소)

- ① 개표일은 공운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날 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시세협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개표 장소는 공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90조(오차와 오차율)

- ① 오차는 명부상의 투표자 수와 개표완료 후 실제 투표자 수의 차(절댓값)와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이다.
- ② 오차율은 (오차/전체 선거권자 수)*100(%) 이다.

제91조(결선투표)

- ① 개표의 결과 득표수가 1, 2위인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해당 두 선본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 결선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결선투표는 공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 선본이 당선된다. 다만, 개표의 결과 해당 두 선본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결선투표를 반복한다.

제92조(오차에 의한 재투표)

-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재투표는 개표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재투표는 공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시간에 준하여 이를 동안 진행하고, 선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찬성표가 투표수의 과반일 경우 당선한다. 다만,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반복한다.

제93조(자격 박탈에 의한 재투표)

- ① 두 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투표 개시 이후 개표 이전에 하나 이상의 선본이 자격 박탈되면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재투표는 해당 선본의 자격 박탈 후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 ③ 재투표는 공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 시간에 준하여 3일 동안 진행하고, 모두 종료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투표 기간을 하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표의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클 시 재투표를 반복한다.

제14장 당선 공고와 이의제기

제94조(당선)

-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50% 이상이고, 개표의 결과 찬성표가 50% 이상이며,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보다 오차가 작을 시 해당 선본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 ② 두 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50% 이상이고, 개표 결과 득표수 1위와 2위 간의 표차보다 오차가 작으면 득표수 1위인 선본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95조(당선 공고)

공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해야 한다.

제96조(이의제기)

- ① 공운위는 개표 이후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다.
- ② 선본에서 공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본장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③ 선본이 본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④ 본회 회원은 공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⑤ 공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제15장 선거 부정

제97조(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1. 누군가 투표 방해, 이중투표, 대리투표 그 밖의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3. 후보자가 선관위, 선본원, 유권자에게 선본원이 선관위 또는 유권자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4. 그 밖의 위에 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제98조(선거 부정의 판단)

- ① 공선관위와 공운위는 이의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해야 한다.
- ② 공선관위는 누군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공운위에 “선거 부정 판단의 안”을 상정해야 한다.
- ③ 공운위는 본조 제2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한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
- ④ 공선관위와 공운위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해야 한다.
- ⑤ 공선관위와 공운위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선본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⑥ 공선관위와 공운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선본의 선본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16장 당선 무효

제99조(당선 무효)

공운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선본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2. 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3. 당선 선본이 당선을 포기한 경우

제100조(당선 무효의 공고)

공운위는 당선 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7장 재선거

제101조(재선거)

- ① 공운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 실시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본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 오차율이 5% 이상인 경우
 2.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
 3.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4. 당선 선본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 ② 재선거가 결정된 시 공운위는 7일 이내로 재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제18장 선거의 종료

제102조(당선 확정 공고)

공운위에서 정한 이의제기 기간 동안 당선된 선본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않은 경우 선관위는 즉시 당선의 확정을 공고해야 한다.

제103조(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 ① 공선관위는 선거의 제반업무를 마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다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모든 과반 선관위가 해산한 뒤 공선관위는 해산한다.
 1. 선본의 당선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2. 당선한 선본이 없음을 공고하는 경우
- ② 공선관위의 해산으로 선거는 종료된다.

제19장 징계

제104조(선거운동본부 · 후보자의 자격박탈)

공운위는 선본 ·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 ·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본이 3회의 “경고”를 조치 받은 경우
2. 선본이 공선관위의 조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

3. 선거 부정이 확인된 경우

제105조(제재 조치)

- ① 공선관위는 선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1.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공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② 선본이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선관위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접수한 사안은 무효
 2. 공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제재를 조치하기 전까지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A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규정
 3. 선관위가 A사안에 대해 조치한 이후 발생한 동일한 사안을 접수할 경우 이는 A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
- ③ 공선관위는 선본이 “주의”를 조치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④ 공선관위는 선본이 3회 “주의”를 조치받은 경우 “경고”로 전환한다.
- ⑤ 공선관위는 “경고”를 조치 받은 선본의 포스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1. 경고장에는 “경고”의 사유와 조치시기를 기재
 2. 경고장은 A4(297mm*210mm)용지의 크기
 3. 첫 번째 경고장은 바탕색에 노란색을, 두 번째 경고장은 빨간색을, 세 번째 경고장은 검은색을 사용
- ⑥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동안 부착한다. 다만,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를 중단하므로 부착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공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경고장을 철거해야 한다.
- ⑦ “경고”를 조치받은 선본의 후보자는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강의실유세에서 경고 사유에 대한 발언을 해야 한다.

제20장 재정

제106조(회계 기간)

선거의 회계 기간은 공선관위의 구성일로부터 선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07조(예산)

- ① 공선관위는 선거의 예산을 편성하여 선거 공고일 전까지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 ② 공운위는 선거의 예산을 심의·검토하고 이를 공과대학 학생회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한다.
- ③ 예산의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수정할 경우 공선관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표시해야 한다.

제108조(결산)

- ① 공선관위는 공운위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결산을 본회의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 공선관위는 각 항목 별로 결산 내역의 증빙 자료를 정리하여 차기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인계해야 한다.

- ③ 공선관위는 선거의 결산을 선거의 종료일 이후 시행하는 첫 번째 공운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세칙의 효력 발생)

본 세칙은 2020년 10월 28일 제57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공포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